

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(임종득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다부처사업으로 추진되는 국방 분야 우주개발사업에 대하여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과 「우주개발진흥법」의 절차를 따르도록 하되, 예외적으로 방위력개선사업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7조제3항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·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김 성 완)